

강원관광대학 직원인사위원회규정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정관 제71조에 의하여 설치하는 직원인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09.1.8>

제 2 조 (정의) 이 내규에서 직원이라 함은 일반직, 기술직 및 기능직을 말한다.

제 3 조 (구성) ① 위원회는 학장이 임명하는 보직자 3명, 직원 4명 총 7명으로 구성한다. <개정 09.1.8>

②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참고인으로 관계부서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.

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
제 4 조 (임기)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 5 조 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직원의 승진, 전보에 관한 사항
2. 직원의 서훈에 관한 사항
3.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
4. 직원인사에 관한 사정기준의 설정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
5. 기타 학장이 부의 하는 사항

제 6 조 (회의소집) 위원회는 학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제 7 조 (의결 정족수)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개정 09.1.8>

제 8 조 (회의록)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학장에게 보고한다.

제 9 조 <삭제 09.1.8>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2년 12월 12일부터 시행된다.

제 2 조 (경과조치) 이 규정 이전에 시행한 직원인사위원회 규정은 이 규정에 준용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1월 8일부터 시행된다.